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2 February 2018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복 상무이사

(Tel: 02-2112-0982)

IRS Works with OECD to Launch Global Tax Risk Assessment Program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3 pg. 100)

미국세청(IRS), OECD와 국제 조세 위험 평가 프로그램 개발

ICAP(The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는 국가간 세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OECD의 시험적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와 기타 세무정보를 활용하는 자발적인 프로세스입니다.

IRS가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 프로그램에는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영국 및 미국의 세무당국과 해당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그룹이 참여하여 세무현황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목적과 내용

ICAP 시범 책자(Pilot Handbook)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서,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남발을 제한하는 것과 다자간 협상 또는 주요 과세당국의 참여를 통해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과세 위험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OECD 시범

책자는 현재에도 작업 중에 있으며 시험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다국적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ICAP 운영 매뉴얼은 향후 혼합법인(hybrid entities), 혼합 금융 상품 및 원천징수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제공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일정 및 절차

각 다국적기업 그룹의 2016 및 2017 과세연도에 대한 국제 조세 위험 평가는 2018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며 평가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책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기업들이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문서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국가별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
- 세무 현황(uncertain tax positions)
-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
- 가치 사슬 분석
- 글로벌 사업 구조
- 고정사업장 보고서
- 이전가격 보고서

회사와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 간 합의 방식에 따라 패키지는 각 해당 세무당국 또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무당국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며, 기존의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캡오프 미팅은 다국적 그룹이 해당 세무당국과 패키지를 공유한 시점으로부터 6주 뒤에 개시됩니다. 캡오프 미팅의 프레젠테이션은 다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 국가별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
-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위험
- 세무 보고서와 IT 시스템
- 직전 3 개년 간의 사업 구조조정 또는 향후 시점에 예상되는 구조조정
- 국가 간 자금대차의 금액, 성격, 가격 및 다국적기업의 재무 관리방법

킥오프 미팅 이후에는 통합 위험 평가가 수행되며, 경우에 따라 특정 위험 요소에 국한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 평가가 완료된 후 각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포지션을 설명하는 “결과보고서(outcome letter)”를 발행하고, 기타 세무 위험에 대해 논의합니다.

[Poland Clarifies Transfer Pricing Reporting Guidelines \(Bloomberg TP News Archive\)](#)

폴란드, 명확한 이전가격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폴란드는 회계연도가 역년(Calendar year)과 동일한 법인의 경우 3 월 말까지 2017 년 개별기업보고서(Local Transfer Pricing files)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까지는 2 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폴란드 재무부는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금액 통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전가격보고에 대한 지침을 1 월 24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지침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존재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거래 유형별로 거래 금액을 통합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개별 거래를 통합하여 기준 충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법해석(tax ruling) 형식으로 발표된 본 지침은 납세자가 특정 유형의 거래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 사건으로 분류되는 합병, 분사, 인수 등의 경우에만 유형별로 집계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원 판결과는 상반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이전가격보고 금액기준과 그 의미

폴란드 이전가격보고에 대한 금액기준은 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거래 금액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 백만 유로인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 금액이 5 만 유로 이상부터 보고서 작성 의무를 갖습니다.

해당 지침은 또한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자산 및 가격 결정방법 상의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유형의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거래금액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금액 기준도 개정 전 최대 금액기준인 10 만 유로에서 현재 50 만 유로로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은 이번 지침 발표 이전에 겪었던 혼선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납세자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제외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부분이었으며, 이번 지침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거래가 유형별로 통합되고,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모든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금액기준 미 충족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거래들이 보고서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개의 유사한 거래가 있고 5 개의 거래가 금액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존에는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5 개의 거래만 보고하면 되는데 반해 이제는 10 개의 거래를 통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Malaysia: Revisions, updates to APA rules and MAP guidelines

말레이시아 APA 원칙과 MAP 지침에 대한 개정 및 갱신

말레이시아 내국세 수입국(Malaysia Inland Revenue Board)은 이전가격 사전승인신청(APA)과 상호합의절차(MAP)에 대한 개정 사항 및 갱신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소득세법으로도 잘 알려진 APA 규칙 내용에 대한 수정은 2017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APA 신청

및 진행과 관련된 비용(예: 신청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MAP 지침도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Action 14의 최소 기준과 내용을 일치화시키기 위해 갱신되었습니다. 갱신 내용은 일정 부분에 있어 말레이시아의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 "CA")이 조세조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적 협의를 통해 특정 세무 이슈를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MAP 지침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사전 미팅(Pre-filing meeting)

- 납세자는 서면으로 MAP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하는 거래를 사전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CA의 지원을 요구하는 이슈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Submitting a formal request)

- 납세자가 MAP를 신청하는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양측 CA가 모두 납세자의 MAP 신청 의사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합니다.

권한 있는 당국의 제안(Competent Authority Proposal)

- MAP 신청 접수 후 제기된 이의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말레이시아 CA는 납세자와의 일방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칩니다.
- 말레이시아 CA는 자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관할지역 CA와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게 됩니다.

합의 전 납세자의 확인(Confirmation by taxpayer before agreement)

- 상대국 CA와 합의가 도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MAP 담당자는 납세자에게 제안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

면으로 승낙 여부를 확정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실행(Implementation)

- MAP 합의가 도출되어 납세자에 의해 승낙되면, 합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MAP와 국내 조세쟁송과정 간의 중재(Interaction between MAP and domestic appeal process)

- 납세자는 MAP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관련 세무서에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 102조(1A)에 따르면 납세자는 상호합의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소득세 특수 관세청(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 또는 SCIT)에게 조세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MAP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MAP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또는 DG)에게 해당 조세심판을 SCIT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MAP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i. SCIT/법원 결정이 내려진 조세심판 사건
 - ii. 관련법안 96A조에 의한 과세 추징 심사를 받는 경우
 - iii. 조세회피 또는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U.S., EU Experts to Review Tax Reform's 'Unintended Consequences'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3 pg. 91)

미국과 EU 의 세무전문가들, 미(美) 세제개혁으로 인해 발생된 영향(unintended consequences)에 대해 검토

미 재무부 장관 Steven Mnuchin은 최근 발표한 미국 세제개혁이 EU 기업들에게 미치는 경쟁열위 및 매출 감소 등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지난 1월 25일 세계경제포럼에서 프랑스 경제 장관인 Bruno Le Maire와 가졌던 회의와 관련하여 Mnuchin 장관이 EU의 불편 사항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실무적인 사례와 함께 논의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외교관에 따

르면 EU는 미국의 세제개혁이 불법 수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별조항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제개혁으로 인한 EU의 대응

Mnuchin 장관과의 미팅은 28개의 EU 회원국이 미국의 새로운 세제(Pub. L. No. 115-97)가 WTO 규정뿐만 아니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OECD의 BEPS 개혁을 침해한다는 우려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에게 다음의 질문에 대응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미국의 세제개혁이 해당 국가 경제 및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미치는 영향
- 회원국 개별이 아닌 EU 합의체(28개 회원국)로서 관련 대응 방안을 구상할 것인지 여부
- OECD와 G20연합을 통한 국제적인 세제개혁 영향에 대한 평가 방안
- EU의 경쟁력 유지 및 미국의 세제개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조세 정책 전략(특히 EU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을 변경할지 여부

EU 회원국의 세무 전문가들은 1월 17일 회의에서 상기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해당 논의를 통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모든 EU 회원국을 대표하여 WTO에 무역법 위반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은 지난 12 월 다른 EU 회원국과는 별도로 서한을 통해 자신들만의 불만사항을 Mnuchin에게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른 소규모 EU 국가들의 불만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